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11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11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11. 20.

다. 상정일자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11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김춘옥】

### 가. 제안이유

납세자보호의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안전 심의 범위 변경(안 제8조)
-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기준 변경(안 제16조)

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「시·군·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」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
-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 (제출의견 없음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가.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납세자보호의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조례안 개정 내용

- 안 제8조에는 안건 심의 범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100만원 초과인 안건을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변경되는 내용임.
- 안 제16조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기준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 신청하는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신청으로 변경되는 내용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중 납세자에게 혼란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치구별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문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 혼란방지 및 형평성 제고에 따른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충민원 안전심의 기준 금액을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통일성 있게 맞추므로 행정 처리에 따른 혼란과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

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